

## 장비거래기본계약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이하 "갑"이라 함)와 [ **(취) 아토** ](이하 "을"이라 함)은/는 장비거래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1조 [기본원칙]

- 1. 본 계약은 "갑" "을" 간의 계속적인 장비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정된 장비수급 및 원활한 생산활동 확보와 더불어 "갑" "을" 간의 상호 이익과 신뢰 및 업무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계약에 규정된 내용은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갑" "을"간의 개개의 장비 거래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우선하여 적용되다.

## 제 2 조 [개별계약의 성립]

- 1. 개별계약은 "갑"이 구매할 장비 (이하 "계약물품"이라 함)의 품명, 사양, 가격, 납기, 수량, 납품/설치장소, 검사 방법 및 시기, 지불방법, 발주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승낙거절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 및 기타 필요 사항이 기재된 장비발주서 등의 문서("갑"의 사양서, 도면 및/또는 "을"의 사양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서"라 함)를 "을"에게 교부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거래신청을 하고 "을"이 동 신청에 대하여 승낙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승낙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을"이 "갑"의 발주서를 수령한 후 5 일 이내에 "갑"에게 승낙거절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2. "갑"은 납기가 세분되어 발주서상에 계약물품의 납기를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서에 납기를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계약은 발주서와 함께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 및 납품일정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의거절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가 명시된 납품일정표를 "갑"이 별도로 발행하고 "읔"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을"의 동의

와 관련하여서는 제 1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3 조 [계약의 변경]

"갑"은 설계 변경, 생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의 서면 동의를 얻어 사양, 가격, 납기, 수량, 납품 장소 및 지불 조건 등에 대하여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을"은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 4 조 [견적서 등 제출]

- 1. "갑"이 특정 계약물품에 대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에게 견적서 및 그 부속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이 제출한 견적서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 재견적 또는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합리적인 거절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제 5 조 [포장 및 품목 표시]

- 1. 포장은 대한민국 및 관련된 국가의 법규(관세, 수출입 및 환경관련 법규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규격과 특성에 적합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호 및 보전에 충분하며 상관습에 비추어 적절하여야 한다.
- 2. 기계의 모체와 분리된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 3. "을"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자원부 장관이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당해 품목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물품의 포장재가 목재일 경우 "을"은 식물방역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각 품목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품목의 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 제 6 조 [사용 및 취급주의서]

- 1. 계약물품의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을"은 계약물품의 납품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까지 계약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을"이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불이행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7조 [납품 및 수입검사]

1.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때(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해당 품목의 납품을 완료한 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CALLES OF ENGLISHER

- 2. "갑"은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 완료 여부와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로 위의 검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가.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 나. "을"이 계약물품을 조립 및 설치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물품을 시운전하기로 한다.
  - 다. 계약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갑"은 제조과정에서도 검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수의 절차 및 효과는 양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이 충실한 검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의 검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물품의 납품 이후의 본 조에 따른 "갑"의 검수 권한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라.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3. "갑"은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계약물품 납품 의무는 "갑"으로부터 검수 합격 통지를 받음으로써 그 이행이 완료된다.
- 4. "갑"은 제 2 항의 검수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본 계약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동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갑"이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 2 항의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 5. "을"의 계약물품 납품 의무 이행 완료가 납품기일을 도과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을"은 제 1 조와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6. "을"은 "갑"이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는 등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도 제 5 항의 규정이 준용되다.
- 7. "을"은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게 서면으로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 2 항의 절차에 따라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재검수 결과, 여전히 "을"의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되거나 본 계약상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8 조 [소유권의 이전]

납품된 계약물품의 소유권은 "갑"의 수입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고 "갑"이 "을"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시점부터 "갑"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갑"은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동안은 납품된 계약물품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 9 조 [대금지급]

- 1. 별도의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본 계약 제 7 조에 따른 "갑"의 수입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그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물품 대금을 지급 한다.
- 2.. 만일 양당사자간의 별도 서면합의에 의해 "갑"이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갑"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동 선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어야 하는 때에는 "을"은 선급금 전액 및 최초로 선급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선급금 전액의 반환이 완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선급금 전액에 시중은행 일반 어음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원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을"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선급금지급과 동시에 동 선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또는 "갑"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 10 조 [대금의 상계]



- 1.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의 "갑"에 대한 납 품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2. 제 1 항의 상계는 상계할 때마다 수령증을 교환하지 아니하고 "갑" 이 그 명세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 11 조 [지체 상금]

-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 내에 계약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지체 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동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단,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2. "을"은 계약물품의 납기 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비용, 대 고객 지체보상금, 기대이익의 상실 등 모든 직·간접적인 손해를 "갑"에 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때문이거나, 양 당사자가 납기 와 관련하여 사전에 문서로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2 조 [A/S 용 부품 공급]

- 1. "을"은 "갑"에게 공급한 계약물품에 발생하는 후발적인 하자를 신속히 제거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일체의 사후 유지보수 활동(이하총칭하여 "A/S"라 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물품의 검수합격일로부터 [24] 제일간 A/S 용 부품을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A/S 부품 공급에도 불구하고 "을"은 본 계약 제 14 조에의거한 하자보증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 2. A/S 용 부품의 대가 지급 여부, 대가 지급시의 그 가격, 물량, 공급 조건 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3. "을"은 A/S 용 부품 공급과는 별도로 자신의 비용으로 "갑"의 직원 및 "갑"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쌍방이 합의한 장소와 일정으로 계약물품의 A/S 와 관련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한다.

## 제 13 조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 1. "을"은 "갑"의 직원에 대해 계약물품 사용에 필요한 교육을 자신의 정기/비정기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계약물품 사용상 필요한 사용설명서(MANUAL)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제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 2.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갑"에게 공급한 계약물품을 적절히 유지, 운용, 보수 또는 지속적으로 성능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체의 기술 지원 활동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갑"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거나 "을"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업장에 자신의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제 14 조 [하자 보증]

1. "을"은 계약물품 납품 후 검수 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4)개월간







(이하 "하자보증기간"이라 한다) 계약물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완전한 성능을 구현할 것이고, 동 기간 동안 계약물품이 설계상·제조 공정상 하자가 없을 것이며 "갑"이 의도하는 바 상업적, 기술적 용도에 따른 계약물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아무런 문제(이하, 이를 통칭하여 "하자"라 한다)가 없을 것임을 보증한다.

2.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제 1 항에 규정된 계약물품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계약물품을 "갑"이 요청하는 기한 내에 교체하거나 수리하기로 한다. 단, 계약물품의 하자가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견 또는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발생이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을"은 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3. "을"이 제 2 항에 따른 "갑"의 요청 기한 내에 계약물품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거나 그 치유가 불완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 통지 후 직접 또는 제 3 자를 이용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치유에 소요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을"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이 계약물품의 개조 또는 변경을 행한 결과 발생하거나(제 3 항의 경우 제외) 하자보증기간을 경과하여 발생한 하자인 경우에도 "갑"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제공하되,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는 실비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갑"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물품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하자보증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해당기간 만큼 하자보증기간은 연장된다.

6. "을"은 본조에 의한 하자 보증 책임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기간 만료 시 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개별계약에 따른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 7 조에 따른 검수 합격 후 제 9 조에 따른 잔금 지급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을" 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조에 따른 하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에는 하자보증 보험증권상의 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갑"에게 귀 속되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고 그때까지 발생된 "을"의 하자보증책 임이 모두 이행된 때에는 "을"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반 환키로 한다. 전항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동 보증보험의 보험기간도 이에 따라 연장되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을"은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지체없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5 조 [환경 관련 법규 준수]

- 1. "갑"과 "을"은 계약물품거래와 관련하여 환경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을"은 계약물품의 포장 및 운송시 물품의 열화,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운송조건을 지켜야 하며, 포장재 및 운송조건이 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을"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계약물품 포장재는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포장재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에 가장 적합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제조물 책임]

- 1. "을"은 "갑"이 발주한 계약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비롯한 제조물책임법상의 관련 책임을 부담한다.
- 2. "을"은 제조물의 책임에 관한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 제 17 조 [비밀준수의 의무]

1. "갑"과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상대방의 업무상, 기술상 및 영업상 비밀, 경영관련 정보 및 이 계약의 내용을 이 계약기간 및 이 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 년간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며, 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등 이 계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본 항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2. "갑"과 "을"은 전항과 관련하여 별첨 "비밀유지 협약"을 체결, 보관 하여야 한다.

### 제 18 조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1. "을"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및 노하우를 계약물품의 제작, 납품하는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제 3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을"은 계약물품을 제작, 납품함에 있어 국내외 제 3 자의 지적재 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을"은 계약물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었을 경우 즉시 문서로서 "갑"에게 통지하는 한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을"의 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동 분쟁을 해결하고 "갑"을 면책하여야 한다. 단, 계약물품 제작을 위해 "갑"이 제공한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을"은 즉시 문서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을"이 본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제 19 조 [지도 및 협력]

"갑"은 계약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경영, 제작기술, 공법,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지도 및 조언을 위해 수시로 작업현장에 출장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진다.



## 제 20 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및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물품의 생산 및 품질 보증 등 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자재관리 등의 실태를 수시 로 조사할 수 있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전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제 21 조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계약물품 제작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제 22 조 [권리의 양도 금지]

"을"은 "갑"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개 별계약으로부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 23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1. "갑" 과 "을"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계약 및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부수 협정 또는 개별 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 또는 납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갑" 또는 "을"이 발행,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을 경우

- 4)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 우
- 5) "갑" 또는 "을"에게 제 3 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의 개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 는 파산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 부수 협정 및 개별 계약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6)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 결의가 있는 경우
- 2. "갑" 과 "을"은 자신에게 전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3. 본 계약이 제 1 항에 의하여 해제·해지되었을 경우 해제·해지의 상 대방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하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 4.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5.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에 본 계약 제 2 조에 따라 성립된 개별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을 경우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 25조 [청렴의무]

1. "을"은 "갑"이 윤리경영 선언과 윤리강령 제정 등을 통해 투명한 기업경영,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등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갑"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하고자 "을"은 아래의 제 2 항 내지 제 5 항과 같이 약속한다.

2. 입찰을 포함하여 본 계약의 준비 과정, 체결 과정 및 그 이행 과정을 막론하고 어떠한 단계에서도, "을" 본인이나 "을"의 임직원, 주주, 친인척, 대리인, 이행 대행자 또는 기타 본 계약을 위하여본인과 협력관계에 있는 제 3 자의 각 본인이나 그 임직원, 주주, 친인척 또는 이행보조자 ("을" 본인 이외의 자를 총칭하여 이하에서 "계약관계자")중 어느 누구라도 "갑"의 "계약관계자"중 누구에게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 또는 기타 금전적이득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하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않았으며, 향후로도 그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을"은 서약한다.

3. 제 2 항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음이 사후적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을"은 "갑"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그 이후 "을"과의 일체의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만, 위의 거래 적절의 기한은 제 2 항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 년 후 또는 "갑"으로부터 제 2 항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음이 "을"에게 서면 통보된 날로부터 3년 후 중 늦게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4. 제 3 항의 규정은 "을"이나 "을"의 "계약관계자"들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청구 등 여타 "갑"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음을 "을"은 확인한다.

5. 본 계약의 여타 규정에 불구하고, 본 [ ]조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 제 26 조 [계약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대년[3]월[3]]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기간만료 3 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단, 최장연장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 27 조 [기 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 을 때는 "갑",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갑", "을"간의 계약에 수반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 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3. 본 계약 제 17 조의 내용에 따라 "비밀유지협약서"를 별첨한다.

4. "을"은 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Section A. Labor 에 명시되 어 있는 표준(Standard)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본 계약서에 정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이 표준들을 모두 엄격히 준수할 것을 확 약하다.

상기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장비거래기본계약서 2 통을 작 성하고 "갑" 및 "을"이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09년3 월4일

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대표이사: 건조간 1915

음

상호: (주) 아토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주소: 경기도 시흥시 경웅동 1263-/

대표이사 : 문상명



#### 별첨

## 비밀유지 협약서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이하 "갑"이라 함)와 [ (3) 아호 ] (이하 "을"이라 함)은/는 200**9**년 <u>3</u>월 <u>6</u>일자에 체결한 장비거래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 제 17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기본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기본계약"상의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필요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비밀 유지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제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정 의]



- (1)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기본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제반 기술 자료 및 기타 영업 관련 정보 그리고 일방 당사자의 Idea, Know-how 등으로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를 의미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당사자를 정보 제공자라 하고 정보를 수령하는 타방 당사자를 정보 수령자라 한다.
- (2) 비밀정보는 구두, 서면, 도표, Tape, Diskette, 복사물, List, Model, Sketch, 설계도 기타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나 그 제공방법이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3) 다음과 같은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정보 수령자가 충분한 증거로써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1) 본 협약에서의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 없이 공공매체나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 2) 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정보 수령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미 획득한 정보
- 3) 정보 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공개를 승인한 정보
- 4) 비밀정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획득하거나 개발한 정보

### 제 3 조 [비밀의 표시]

- (1) 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문서, 서면 등의 유형으로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 제공자는 동 비밀정보에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시로 비문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구두 등 무형의 방식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제공자는 제공 당시 동 정보가 비밀정보임을 명시하고 제공 후 30 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동 비밀정보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 4 조 [비밀 유지 의무 및 비밀정보의 취급]



- (1)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하여 정보 수령자는 동비밀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 수령자는 동비밀정보의 누출 또는 부당한 공개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내부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단,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임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비밀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게할 수 있고, 동임직원에게 비밀유지를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
- (2) 정보 제공자가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한 모든 비밀정보는 정보 제공자의 소유이며, 정보 수령자는 이를 본 협약 또는 "기본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령자간의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 본 협약이 중도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와 동 비밀정보의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을 정보 제공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 5 조 [비밀 유지 등 의무 기간]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에 대한 정보 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무단 사용 금지 기간은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하며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의 경우에도 동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존속하다.

## 제 6 조 [기타]

-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2) 본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 문서로써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3) 정보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4) 정보 수령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 수령자 또는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비밀정보의 부당한 공개 또는 누출로 정보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 통을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9년 3 월 6 일

갑

음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상호: (즉) 아<u>ട</u>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주소: 경기도 시흥시 경영동 /263-/

대표이사 : 기조기

대표이사 : 큰 상영